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제정 조례안

의 안 번 호	541
------------	-----

제출년월 : 2025년 11월
제출자 : 성북구청장

1. 제안이유

자치경찰제도 도입에 따른 성북구와 경찰서 상호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지역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구청장의 책무 규정(안 제3조)
- 나.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계획 수립·시행(안 제5조)
- 다. 자치경찰사무 지원사업(안 제6조)
- 라. 자치경찰사무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안 제7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별첨1】
 - 1)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 2)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협의사항 : 해당사항 없음

라. 기타

- 1) 입법예고 : 2025. 9. 25. ~ 2025. 10. 15. (20일간)
- 2) 입법예고 방법 : 구보 및 구 홈페이지 게재
 - 입법예고 결과 : 별도 의견없음
- 3) 비용추계 등 자료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별첨2】
- 4) 인권/부패/성별/아동 영향평가 완료
 - 인권영향평가 결과 : 원안동의
 - 부패영향평가 결과 : 원안동의
 - 성별영향평가 결과 : 개선의견
 - 아동영향평가 결과 : 개선의견

구분	권고내용(개선의견)	반영여부	개선안
성별영향평가	조례안 제6조의2와 관련, '청소년비행방지 등 선도·보호'를 '위기청소년 선도·보호'로 수정하여 사업 지원 범위를 확장할 것을 제안함	×	[불수용 이유] 해당 사업의 지원 대상을 특정 위기 상황에 처한 청소년으로만 국한하지 않고, 모든 청소년을 포괄적으로 보호·선도하고, 예방적 차원에서의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불수용
아동영향평가	조례안 제6조(지원사업)의 제2호에서 아동·청소년의 연령범위를 상위법(아동복지법, 청소년기본법)에서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항내에서 지원대상자(여성, 아동, 청소년)의 순서 정리 및 말미 부분에 '아동'이 추가 명시되도록 의견을 제안함	○	[조례안 제6조 제2호] 실종예방·대응, 청소년 비행방지 등 선도·보호, 성폭력 예방, 아동·청소년·여성 보호 및 범죄예방 등 아동·청소년·여성 분야 사업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적 특성과 주민의 요구를 반영한 치안서비스 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치경찰사무”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 및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범죄예방·생활안전·교통·경비 관련 사무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성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계획) ① 구청장은 지역 치안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한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지원계획 실행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3.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한 체계 구축 방안

4. 그 밖에 치안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②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구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성북구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③ 구청장은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서울성북경찰서장 및 서울종암경찰서장에게 자료 제출 요구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순찰 및 범죄 예방시설 운영·유지관리, 주민참여 범죄예방활동 지원, 안전사고·재해·재난 시 긴급구조지원 등 생활안전 분야 사업
2. 실종예방·대응, 청소년 비행방지 등 선도·보호, 성폭력 예방, 아동·청소년·여성 보호 및 범죄예방 등 아동·청소년·여성 분야 사업
3.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 안전교육·홍보, 통행 제한·허가, 교통법규위반 단속, 어린이통학버스 점검
4.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관리 등 교통 분야 사업
5. 가정폭력·아동학대·노인학대·학교폭력 피해자 등 취약계층 지원 및 연계 분야 사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협력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서울성북경찰서, 서울종암경찰서, 성북구의회, 서울특별시 성북

강북교육지원청, 성북소방서 등(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실무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실무협의회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성북구 치안협의회로 대신할 수 있다.
- ③ 관계기관 간 업무추진을 위한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첨1】

관 계 법령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경찰의 사무) ① 경찰의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국가경찰사무: 제3조에서 정한 경찰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사무. 다만, 제2호의 자치경찰사무는 제외한다.

2. 자치경찰사무: 제3조에서 정한 경찰의 임무 범위에서 관할 지역의 생활 안전 · 교통 · 경비 · 수사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무

가. 지역 내 주민의 생활안전 활동에 관한 사무

- 1) 생활안전을 위한 순찰 및 시설의 운영
- 2) 주민참여 방범활동의 지원 및 지도
- 3) 안전사고 및 재해 · 재난 시 긴급구조지원
- 4) 아동 · 청소년 · 노인 · 여성 · 장애인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보호 업무 및 가정폭력 · 학교폭력 · 성폭력 등의 예방
- 5)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사회질서의 유지 및 그 위반행위의 지도 · 단속. 다만, 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행정청의 사무는 제외한다.
- 6) 그 밖에 지역주민의 생활안전에 관한 사무

나. 지역 내 교통활동에 관한 사무

- 1)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지도 · 단속
- 2) 교통안전시설 및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심의 · 설치 · 관리
- 3)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 및 홍보

- 4) 주민참여 지역 교통활동의 지원 및 지도
- 5) 통행 허가, 어린이 통학버스의 신고, 긴급자동차의 지정 신청 등 각종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무
- 6) 그 밖에 지역 내의 교통안전 및 소통에 관한 사무
 - 다.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 관리
 - 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사사무
 - 1) 학교폭력 등 소년범죄
 - 2) 가정폭력, 아동학대 범죄
 - 3) 교통사고 및 교통 관련 범죄
 - 4) 「형법」 제245조에 따른 공연음란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에 따른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에 관한 범죄
 - 5) 경범죄 및 기초질서 관련 범죄
 - 6) 가출인 및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실종아동등 관련 수색 및 범죄

□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생활안전·교통·경비 관련 자치경찰사무의 범위 등)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및 범위 등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지켜야 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조에 따른 경찰의 임무 범위와 별표에 따른 생활안전, 교통, 경비 관련 자치경찰사무의 범위를 준수할 것
2. 관할 지역의 인구, 범죄발생 빈도 등 치안 여건과 보유 인력·장비 등을 고려하여 자치경찰사무를 적정한 규모로 정할 것
3. 기관 간 협의체 구성, 상호협력·지원 및 중복감사 방지 등 자치경찰사무가 국가경찰사무와 유기적으로 연계되고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사항을 포함할 것
4. 자치경찰사무의 내용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는 데 효율적인 것으로 정할 것

【별첨2】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에 따른 비용 지원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제2항2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로서 비용추계서 미첨부.

4. 작성자

행정문화국 행정지원과장 정창섭